

등록번호	취업지원과-574
등록일자	2015.1.13.
결재일자	2015.1.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취업지원과장	기획재정국장	
정지영	김행근	서창수	01/13 박진석	
협 조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기획재정국
취업지원과

요 약 지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2(월) ~ 6.30(화)[4개월]
- 사업내용 및 선발인원 : 4개사업 18명

연번	사 업 명	사업 부서	선발인원
1	에코마일리지 홍보 및 모집사업	환경과	2
2	공원환경 개선 및 정비	공원녹지과	7
3	폐자전거 재활용사업	교통행정과	4
4	쪽방촌 공동작업장	취업지원과	5

- 사업비 : 142,800천원(국50%, 시25%, 구25%)

■ 참여자 접수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기간 : 2015. 1. 19(월) ~ 1. 26(월)[8일간]
- 접수기관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사업시행부서

■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 가구소득, 재산, 세대주, 부양가족,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선발방법 :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상위점수 순서에 의한 선발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26시간, 주5일 근무 원칙
- 임 금 : 시간당 5,580원(교통간식비 3,000원/ 주·연차 유급휴가)
 - ※ 만65세이상은 일 3시간 근무
 - ※ 쪽방촌 공동작업장 사업 : 지침에 의거 1.15배(시간당6,420원)지급

■ 추진일정

- 참여자 모집 및 접수 : 2015. 1. 19(월) ~ 1. 26(월)[8일간]
- 사업참여자 심사 : 2015. 1. 27(화) ~ 2. 23(월)
- 선발 및 통보 : 2015. 2. 25(수)
- 사업개시 : 2015. 3. 2(월)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2015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II 사업 개요

- 상반기 사업기간 : 2015. 3. 2(월) ~ 6. 30(화) [4개월]
- 선발인원 : 18명
- 대상사업 : 4개부서 4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선발인원
1	에코마일리지 홍보 및 모집사업	환경과	2
2	공원환경 개선 및 정비	공원녹지과	7
3	폐자전거 재활용사업	교통행정과	4
4	쪽방촌 공동작업장	취업지원과	5

- 사업비 : 142,800천원(국 50%, 시 25%, 구25%)

III 추진계획

1 신청자접수

신청대상자

대상자 구분	참여자격 및 주요내용	비고
사회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 	·외국인 등록 번호소지자 포함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 근로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한 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제외)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 (최근 3년 기준)
 -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 다만,모집인원 부족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경우 제공 또는 어려울 경우 기지원자 중 탈락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직업훈련 참여 동의서 받은 후 선발)
- 실여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같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가구 2인 참여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 '14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같음
- 기타 질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① 신청자 접수기간 : **2015. 1. 19(월) ~ 1. 26(월)[8일간]**
 - 신청자는 세부사업 중 2개 사업까지 참여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
 - 쪽방촌 공동작업장 사업은 남대문지역상담센터 통하여 접수
- ②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붙임 2】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붙임 3】
 -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지참)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사업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2 대상자 선발

2 선발 방법

- ① 선발기준 : 가구소득 재산 세대주부양가족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② 참여자 선발절차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 65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안내를 하고, 그래도 참여를 희망할 경우 총 선발인원의 27%이내 선발가능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 동일순위 내 우선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부양가족수 > 장애인가족
 -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대상자(20%이내)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발생 시 즉시 채용
 - **쪽방촌 공동작업장사업의 경우 남대문지역상담센터 통하여 쪽방촌주민 개별접수 및 면접시행(참여의지 판단)**

3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3 임금 및 근로조건

- ① 근무시간 : 주26시간, 주5일 근무
 - ※ 사업 종류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운영 가능
- ② 임금단가 : 시간당5,580원(교통·간식비 3,000원, 주차, 연차 유급휴가)
 - ※ 만65세(49.3.1이전출생자)이상은 일 3시간 근무
 - ※ 쪽방촌 공동작업장 사업의 경우 안행부지침에 의거 1.15배 지급

4 사업의 지도·감독

4 사업장 관리

- ① **사업 목표량 부여** : 사업부서 담당자는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함
- ② **사업장 지도·감독**
 - 작업시작 전 출석여부 확인 : 1일 3인(근로자, 작업반장, 사업담당 공무원)이 모두 출석여부 확인한 후 서명하여 부정출석 방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사업장에 감독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야 함
 - 총괄부서(취업지원과)는 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현장점검)
- ③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불성실 근무로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 근로능력 미달자 등은 자치단체 장이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사항 발생시 감독근무일지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조치사항을 고지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이후 사업부서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 ① 일자리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 : 2014. 9. 2 구성 완료
- ② 사업장 안전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안전책임자 : 사업담당 부서장
 - 안전관리담당자 : 사업담당 공무원
 -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을 보조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③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붙임4 현장작업·교육일지 뒷면)
 - 작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 전 및 작업중 작업복, 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중심의 이행상태 확인관리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안전사고 관리대장 작성
 - ※ [붙임7]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 [붙임8] 안전사고 관리대장 활용
- ④ 근로자 보건관리 : 참여자는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결과 통보서 제출
 - ※ 단 2014 및 2015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⑤ 산재보험처리 절차

- 재해 발생시 안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재해조사 실시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서식)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IV 향후 추진일정

- 참여자 모집 및 접수 : 2015. 1. 19(월) ~ 1. 26(월)[8일간]
- 사업참여자 심사 : 2015. 1. 27(화) ~ 2. 23(월)
- 선발 및 통보 : 2015. 1. 25(수)
- 사업시행 : 2015. 3. 2(월)

V 행정사항

- 공고 및 홍보실시 : 주관부서, 동주민센터, 공보실
 - 공고 : 중구 홈페이지, 일모아시스템, 동 주민센터
 - 홍보 : 중구광장, 중구블로그 등(공보과 협조)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접수창구 운영 : 각 동 주민센터 및 주관 부서
 - 신청서 접수
 - 선발기준 점수표 및 접수대장 작성·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확인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 취업지원과
 - 신청서 취합 및 자격조회
 - 최종 참여자 선발 후 각 사업 부서로 배치
- 사업시행 및 참여자 관리 : 각 사업부서
 - 사업별 사업성격에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보안각서 징구
 - 매월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후 제출
 - 근무자명부 및 출석 관리, 현장작업·안전보건교육 등 각종일지 작성
 - 안전관리요원 지정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참여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 쪽방촌 공동작업장 참여자 모집

-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 [붙임 2] 신청서 및 신청서식
- [붙임 3] 사업장 관리카드
- [붙임 4] 현장작업·교육일지
- [붙임 5] 근무자 명부
- [붙임 6] 근무확인서
- [붙임 7]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
- [붙임 8] 안전사고 관리대장
- [붙임 9] 참여자 출석부 서식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2015-제 호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2015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5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5. 3. 2(월) ~ 6. 30(화) [4개월]
- 모집기간 : 2015. 1. 19(월) ~ 1. 26(월) [8일간]
- 모집인원 : 18명

번호	사업부서	사업내용	인원	근무시간	자격요건
1	교통행정과	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	4	주26시간, 주5일 근무	신체건강한 자
2	공원녹지과	공원환경 개선 및 정비	7		
3	환경과	एको마일리지 홍보 및 모집	2		
4	취업지원과	쪽방촌 공동작업장	5		

※ 희망사업 2순위까지 반드시 기재(미기재시 불이익 본인 책임)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p><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5세 미만자로 한정 ③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⑩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최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지참)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만 지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업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 근무여건 :

- 근로시간 : 주26시간(주4일 5시간, 1일 6시간/주5일 근무 원칙)
※ 65세 이상 : 1일 3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주15시간)
- 임금 : 시간당 5,580원(간식비 3,000원 별도)
- 4대보험 의무가입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합격자 발표 : 2015. 2. 25 (수)

○ 공고내용 문의처 : 취업지원과 ☎ 3396-5383, 주소지 동주민센터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5. 1. .
중구청장

[붙임 2] 신청서 및 신청서식(표준서식) 4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5. . .)				
성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기간	20 ~ 20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경력(), 기타()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20	20 ~ 20	20 ~ 20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본인		-		
	(피)부양자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본인		-	
		배우자		-	
				-	
				-	
		-			

- ①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처번호, 세대원(수),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공무원가족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동의함 동의안함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붙임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중구 취업지원과(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5. . .	본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 ○ 시장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5세 미만자로서 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이하* 참여 여부(*사업신청일 기준)※구체확인	해당없음, 2년이하 참여(), 2년 이상 참여()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 여성 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숙자	해당, 해당없음	
⑫ 기재사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제출)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⑬ 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5 . . .

○○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 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3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리카드
------------	-------------------------

(주관부서 : 중구 과)

사업유형		사업담당공무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공무원(전화 02-3396-)
사업명		사업장 감독공무원	담당공무원(전화 02-3396-)
		사업장 안전책임자	부서장(전화 02-3396-)
		사업장 작업반장	(전화 02-3396-)
사업목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 (인건비 :천원/ 재료비:천원)		
사업장위치		투입인원	1일 : 명 취약 명/전문 명
		연인원:	명 취약 명/전문 명
월별 추진계획	○ ()월 :		
	○ ()월 :		
	○ ()월 :		
	○ ()월 :		
사업성과 (기대효과)	○		
	○		
특이사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및대책)	○		
안전보건교육	○		
안전사고현황	○		
기능기술 전수 교육 현황	○		
비고			

(뒷면)

구 분		주 요 추 진 실 적
추진 상황	()월 ○	
	()월 ○	
	()월 ○	
	()월 ○	

현 장 사 진

--	--

붙임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작업 · 교육일지**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2015. . . (요일) , 날씨

1. 사업개요

- 소개지 :
- 사업명 : ()
- 근로계획인원 : 명(남, 여)(취약 /전문)
- 사업기간 :

2. 금일 참여 인원 : 명(남, 여)(취약 /전문)

※ 예시) 불참자 : 3명(결근: 홍길동, 이순신, 조퇴: 아사달)

3. 작업내용

- 금일작업 목표
-
-
- 금일 작업 성과
-
-
- 작업내용
-

4. 안전보건교육 인원 및 내용(교육참석 : 명)

-
-

5. 안전관리 · 점검표

항목	이상유무	추가조치
①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 신규투입자에 대한 추가교육여부 ○ 당일 작업 내용에 적합한 교육여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참여(명)/이수(명) 신규(명)/이수(명)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②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지급보호구 종류 및 수량 ○ 작업에 적합한 안전인증 보호구 지급 여부 ○ 복장·보호구 착용교육 실시여부 ○ 복장·보호구 착용실태 * 회전체 근접작업 말뚝방지를 위해 복장, 두 발 상태 확인 및 면장갑 착용금지	<input type="checkbox"/> 지급보호구: 종 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③ 장비 및 설비 이상유무 ○ 장비의 관리상태 ○ 보호장비의 부착여부(해당시 적용) ○ 이동시 장비의 안전한 휴대 여부 ○ 장비 및 설비의 사용요령교육 실시여부 ○ 장비 및 설비의 안전한 사용 실태	<input type="checkbox"/> 장비: 종 개 <input type="checkbox"/> 부착 <input type="checkbox"/> 미부착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④ 작업장관리 상태 ○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여부 ○ 주위차량과 충돌방지조치여부 등 ○ 도로 주변작업시 차량유도자 배치 여부 ○ 작업장주위 위험요소 제거여부 * 위험 작업시 작업 감독자 배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조치 <input type="checkbox"/> 미조치 <input type="checkbox"/> 배치 <input type="checkbox"/> 미배치 <input type="checkbox"/> 조치 <input type="checkbox"/> 미조치	
수 비상시 연락체계 및 응급조치 ○ 현장에 구급함 비치 여부 ○ 인근병원연락처 및 후송수단 확보 ○ 비상시 보고체계 확보 여부	<input type="checkbox"/> 비치 <input type="checkbox"/> 미비치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6. 특이사항

-
-

상기와 같이 작업하였음

2015. . .

작성자 : (인)

붙임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 명부**

일련번호 : 제 2015 - 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 명부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붙임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한 사항	붙임 : 근로계약서		
퇴직·해고·사망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 사업장별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근로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붙임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제2014 - 호

근 무 확 인 서

인 적 사 황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재 직 상 황	④ 직 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위 사업장)		
	⑤ 재직기간	2015.03.02~2015.06.30		
⑥ 용 도	○○기관 제출			
<p>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p> <p>2015년 월 일</p> <p>중 구 청 장</p>				

붙임7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한 준수사항이며, 동 내용 외에도 작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대책 수립 추진

공통 사항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경고,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법제23조 1,2,3,4항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붕괴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법제24조 1,2항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제26조 1항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세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 참조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법제38조2	석면조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
법제38조4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함 (석면조사 생략의 경우 포함)
법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농약 등)를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법제43조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전염병, 정신 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지역특산물 상품화/ 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 지역특산물 가공작업/ 공예품 제작시 중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 ○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 가공작업시 안전화, 장갑 착용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실시

② 폐자원 활용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폐자원 재활용, 자전거 및 수리사업	○ 재활용 분리작업 중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	○ 분리수거 작업시 안전화, 장갑 착용 손이나 발로 누르는 행위 금지
	○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인력보조장비 사용 .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실시
	○ 공기압축기 폭발, 회전부에 감기거나 끼임	○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에 점검을 실시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 유무
○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	○ 핸드그라인더, 핸드드릴기 등과 같은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서 인출된 콘센트 등에 접속	

③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 재봉작업, 제품제작 시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	○ 재봉작업, 제품제작 시 안전화, 장갑 착용
	○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실시
	○ 음식조리 중 뚜껑을 열다가 스팀에 화상, 계단 등을 통행중 넘어짐	○ 뜨거운 조리기구를 다룰 경우 안전장갑 착용, 안전통로 확보 등
	○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물기를 수시 제거하고, 미끄럼방지용 신발(장화) 착용
○ 과도한 물량이나 계단 통행시 넘어짐	○ 적정량 운반 및 계단 출입시 점진집중	
○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고령자, 환자, 어린이 등을 부축, 운반, 이동시 보조기구 사용.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4 지역유희공간 재활용/ 문화관광 명소 활성화/ 공원조성 사업 / 지역탐방로 개설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지역유희공간 재활용, 문화관광명소 활성화, 공원조성, 지역탐방로 개설사업	○ 이동식 사다리 사용 보수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상하부 넘어짐방지 조치, 안전모 착용
	○ 페인트, 신나 등을 사용하여 시설 등 도색(옥내)작업시 화재 및 유기용제 중독	○ 담배 등 화기사용 금지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 비치 ○ 수시로 환기 실시 및 방독마스크 착용(지하공간 등 밀폐장소 작업시는 송기 마스크 착용) ○ 페인트·신나 통은 사용후 덮개 밀봉
	○ 전동공구 등을 이용한 보수 작업시 낙하, 찢림	○ 보안경, 안전대(낙하방지용 벨트) 및 안전장갑 착용
	○ 자재 취급시 찢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수시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찢리거나 말림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 길이나 계단 통행시 인도 턱(경계석)이나 이물질에 걸려 넘어짐	○ 통행시 전방 주시 및 적절한 양의 물건운반, 올바른 신발 착용

수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슬레이트 지붕 개량	○ 슬레이트 지붕 개·보수 작업중 슬레이트 및 지붕 채광창(Sun-light) 파손으로 추락	○ 전문가 이외에 지붕 출입금지 ○ 지붕 상부 작업 시 경량의 작업발판(폭 30cm 이상) 사용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 건물내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 지붕 개구부 및 끝부분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	○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지붕위로 올라가기 위한 승강로 설치 ○ 사다리 사용시 동료가 사다리 지지
	○ 지붕 이동 중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한 추락	○ 작업전 지붕구조 사전 숙지 ○ 혹서기,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금지
	○ 석면분진 노출에 의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피해 우려	○ 작업 대상물이 석면조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 파악 ○ 석면 함유시는 허가받은 전문 해체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기타 석면함유 대상을 취급은 산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7조 내지 제498조의 기준에 따름 - 작업장내 보호구 미착용자에 대한 출입금지(경고표지 설치) - 작업장내에서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 - 작업장 인접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건조실 등의 위생설비 설치 - 분진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착용(방진 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신발) 등
	○ 불법 폐기물 처리	○ 석면함유 잔재물(작업중 사용한 보호구 및 작업복 등 포함)은 비닐 등 포대에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취약계층 주택 개선(도배, 장판, 전기시설교체 등)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재해	○ 누전차단기 부착 전원에 접속 사용
	○ 창문 교체·수리, 장판 운반 중 근골격계질환	○ 창문 교체 및 수리 작업시 신체를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금지 ○ 종량물 취급시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작업장 바닥 적재물에 의해 걸려 넘어짐	○ 정리정돈 철저히 및 실내장판, 도배작업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사용
	○ 지붕 수리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 및 지붕위에서 추락	○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에는 2인1조 작업, 지붕위 작업시에는 작업발판 사용

숙 친환경생활공간관리 및 기타시책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자전거길, 녹색길 조성 및 관리사업 등	○ 자전거길 풀 베기 등 작업 시 손, 발 베임, 찢림	○ 낫이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시 안전화와 안전장갑 반드시 착용
	○ 자재 취급시 찢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수시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찢리거나 말림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 종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고령자, 환자, 어린이 등을 부축, 운반, 이동시 보조기구 사용. 2인1조 운반작업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붙임8 안전사고 관리대장(엑셀 작성)

연번	광역구분	자치단체	사고자	사고일	주민등록번호	나이	성별	사고유형	사고발생내용	통계유형	산재처리결과					
											소계	산재확정	산재아님	심사중	미신청	산재여부확정일
	합계										4	1	1	1	1	
1	서울시	종로구	김일동	13-3-2	***** *****	64	여	사망	넘어짐	사망	1	1				13-5-2
2	서울시	종로구	홍행복	13-3-3	***** *****	57	남	중상	미끄러짐	추락전도	1		1			13-6-20

<작성요령> : 제출시점까지 일어난 사고를 모두 제출(11월 말까지 월보를 보면 사업시작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어난 사고 모두를 제출)

1. 사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관리(필요시 요양보험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정확히 기재)
2. 산업재해 관리 범위 : 작업 중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밀접한 관련으로 일어난 사고

*본인 지병, 제3자 가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미신청한 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고는 제외

3. 사고일 : 반드시 엑셀 날짜 형식으로 기록(2013-9-2, 또는 2013/9/2)

4. 사고유형 : 사망, 중상, 경상, 단순 부상중에서 택일(콤보 상자내에서만 택일)

- 사망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주 원인으로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중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중상이상의 것
- 경상 : 5일 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 단순부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부상

4. 통계유형 : 골절절단, 추락전도, 빠입, 개인질병, 교통사고, 배임절립, 부딪힘, 벌레물림, 감염성질환, 사망, 기타중에서 택일

*주) 통계유형은 통계를 위한 분류 기능이므로 실제 사고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5. 산재 처리 결과

- 해당란에 숫자(숫자1일입)를 입력 - 숫자 1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것(특히공백, 스페이스바만 눌러지 말것)
- 최종확정일 : 산재확정, 산재아님 등 산업재해 결과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날짜를 기록

붙임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사업명 : 00체험장 조성사업
 사업관리 부서 : 00시 지역경제과
 사업장 현장관리자(직장) : 박관리

사업기간 : 2015. 3. 2 ~ 2015. 6. 30
 사업관리 담당자 : 지역경제과 토목주사 홍길동
 근로자 : 김지역(주소 : 000면 00리 111번지)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3/2	3/3	3/4	3/5	3/6
근로자			김지역	김지역	김지역		
직장			박관리	박관리	박관리		
사업담당			홍길동	홍길동 09:00-11:00(2H)	홍길동 14:00-18:00(4H)		
근로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3/7	3/8	3/9	3/10	3/11	3/12	3/13
근로자							
직장							
사업담당							
근로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월결산 사업관리 담당자가 직접	작업장 총 근무일수 : 20일						
	근로자	근무내역 : 정상근무 18일, 결근1일, 지각1회(2시간), 조퇴1회(4시간) 총근무시간 : 154시간 [(18일*8시간=144시간)+(8시간-2시간=6시간)+(8시간-4시간=4시간)]					

* 출석부 확인 시간 : 근로자와 직장은 작업개시 전까지, 사업관리 담당자는 매일 현장 확인·점검과 동시 실시

끝.

끝.